



: 2017-09-22

서울 행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6783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6. 30.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 중 2,692,060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미 직권으로 취소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796,710원에 대하여는 다툴 의사가 없음에도, 직권 취소된 부분이 별지 처분목록 기재 내역 중 어디에서 취소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 직권 취소되기 전 부과처분 내역 전부를 청구취지에 기재



: 2017-09-22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5.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을 취득하여 지하 1층 724.39㎡, 지상 1층 226.37㎡, 지상 2층 328.61㎡(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에 '[redacted]전문학교'를 설치하고, 2012. 6.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1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2014. 4. 7.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기 전까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도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0. 12. 원고에게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41,36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원고가 다투는 2013년 귀속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내역은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원고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재산세 9,064,6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796,710원, 지방교육세 1,812,91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와 같은 경위로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되었다가 796,710원이 감액되고 남은



2013년 귀속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 합계 2,692,060원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전액 면제하는 취지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그 중 일부인 796,710원만 취소하였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2013년 귀속 재산세 도시지역분 합계 2,692,060원도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7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은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1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과 같다)에 제2호에 따른 세액(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235조 이하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산세의 일부로 포함된 것이다.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입법 연혁을 보면, 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토지 및 건축물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던 재산세를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제180조),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고(제234조의 8), 건축물 재산세의 면제는 제184조의2에서, 종합토지세의 면제는 제234조의13에서 각 규정하고 있었으며, 건축물분 및 토지분 도시계획세의 면제는 제238조의2에서 제184조의2와 제234조의1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면



도시계획세도 함께 면제되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종래 세목별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감면목적별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감면하는 목적·대상에 따라 재산세·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함께 면제되는 경우(예컨대 제271조 노인정에 대한 감면 등) 또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면서도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예컨대 제283조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가 병존하였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된 2005. 1. 5.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제270조 제4항, 제271조, 제272조 등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국갱생보호공단, 독립기념관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반면, 제266조, 제271조 등은 농업회사법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만 50%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고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분리된 2010. 3. 31. 이후에도 이어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등은 재산세 도시지역분까지 면제한다는 취지에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명시한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18조 등은 단순히 '재산세를 경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 즉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경감한다.'고만 규정할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경감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규정에 따른 세액 즉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정되고, 지방세



: 2017-09-22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되는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만 면제될 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



: 2017-09-22

별지

처분목록

번호	과세대상	귀속연도	세목	세액(원)
1	(건축물) ■■■구 ■■■동 ■■■	2013년도	도시지역분	211,070
2	(건축물) ■■■구 ■■■동 ■■■ 1동	2013년도	도시지역분	139,540
3	(토지) ■■■구 ■■■동 ■■■ (면적 477.46㎡)	2013년도	도시지역분	3,138,160



: 2017-09-2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2017-09-22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끝.